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 구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 구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 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를 위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물품계약(제조 · 구매)은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제조 · 구매)를 체결하려는 자가 알아두어야 할 입찰, 선정, 계약체결, 이행,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 구매) 1
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4
1.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4
1.1.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방법과 절차 4
1.1.2.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5
2. 입찰 및 선정 10
2.1.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10
2.1.1.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0
2.1.2. 입찰공고의 확인 12
2.1.3.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14
2.1.4. 입찰의 진행과 성립 15
2.1.5.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17
2.2. 수의계약 20
2.2.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20
2.2.2.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21
3. 계약의 체결과 이행 24
3.1. 계약의 체결 24
3.1.1. 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24
3.2. 계약의 이행 25
3.2.1. 계약금액의 조정 25
3.2.2. 물품의 납품과 담보책임 27
3.2.3. 선금과 대가의 지급 29
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31
4.1.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31
4.1.1.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31
4.1.2. 계약의 해제·해지 32
4.2. 분쟁해결 33
4.2.1.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33

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1.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1.1.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방법과 절차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말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구분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5쪽 참고).

▪ 물품계약(제조·구매)에서 물품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서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물품'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12쪽 참고).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와 국가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비교**

구분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국가 물품계약(제조·구매)
계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정부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법령해석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달청, 재정경제부
분쟁발생시 조정기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계약분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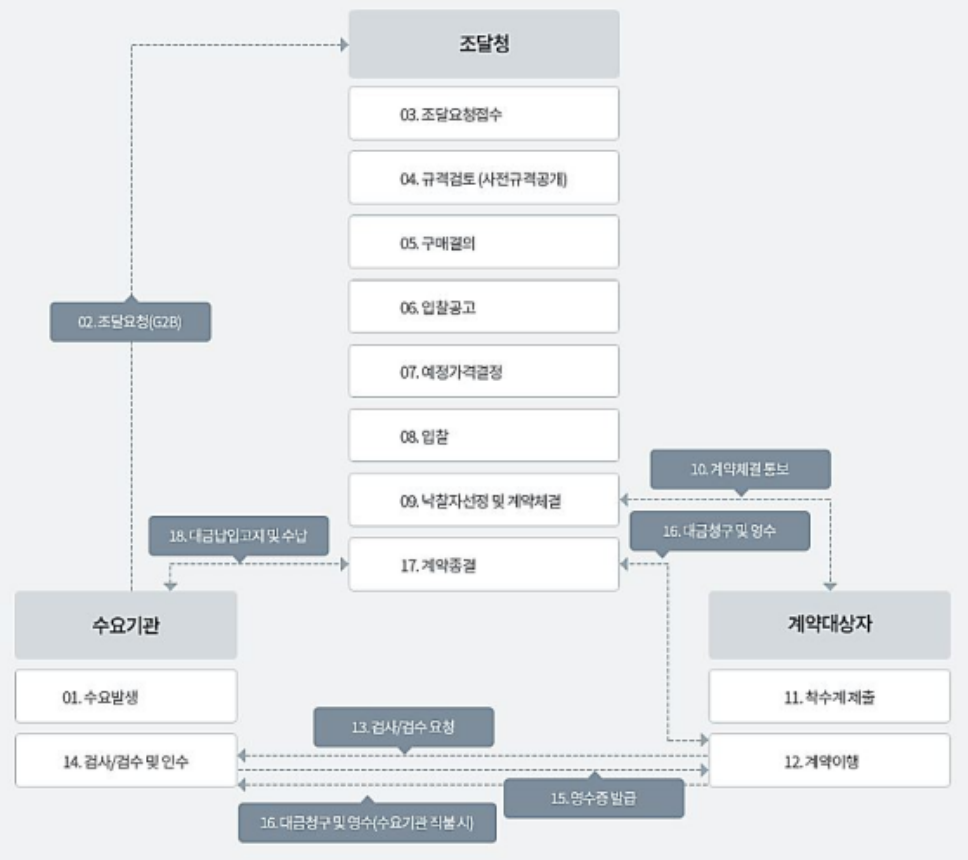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일반적 절차>



< 출처: 조달청(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총액계약-업무처리절차 >

※ 관련 콘텐츠

콘텐츠명	바로가기
국가 공사계약자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바로가기]

1.1.2.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입찰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6쪽).

▹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 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6쪽).

제한입찰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제한입찰의 자격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8~29쪽 참고).

구분	제한요건
해당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기술보유 상황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지역 제한	추정가격 3.5억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물품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물품
설비 제한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물품 납품능력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여부: 환경표지 인증,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등
중소기업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인 물품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Q.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부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나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출처: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388쪽 >

지명입찰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고).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위 1.~4.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7.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8.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의 이해

▪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43쪽 참고).

-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44쪽 참고).

구분	유형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법적기준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유효기간 이내):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 후 단독 응찰 시 1회 유찰(2026년 6월 30일에 종료)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등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Q. 협상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490, 2017. 2. 6. 회신 >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 입찰 및 선정-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 입찰 및 선정-수의계약-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선정

2.1.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2.1.1.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함)

√ 주민참여감독자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단서).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Q.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288, 2012. 5. 25. 회신 >

Q.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나요?

A.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닌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 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일반민원(2022. 5. 9.)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
-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입찰공고의 확인

물품계약(제조·구매)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구매규격의 사전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본문 참고).

-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단서 참고).

※ "추정가격"이란 물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

▪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36조).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참고).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준 및 비율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

입찰 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서류의 제출이 갈음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 입찰참가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참가자는 납부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참고).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 ※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4. 입찰의 진행과 성립

입찰서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직접입찰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입찰은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면 성립되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 성립

▪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무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참고).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 입찰 참가자격 등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품질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위의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반된 입찰

▪ 다만,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 **Q.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
> A.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
>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08, 2017. 7. 6. 회신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찰(開札)은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개찰(開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 개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2.1.5.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계약이행능력은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참고).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2단계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①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②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 “2단계 입찰”이라고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고).

▪ 이러한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계약은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2호).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명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입찰대상자들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함)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입찰대상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명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희망수량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 이와 같이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落札)이 선언됩니다.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낙찰이 선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

2.2. 수의계약

2.2.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2.2.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참고)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참고)

▹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참고)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 참고)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참고)

▹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위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견적서의 제출 생략

▪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및 제31조의5제1항·제2항).

-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단서 및 제31조의5제1항·제2항).

> -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 입찰 및 선정-경쟁입찰을 통한 계약-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체결과 이행

3.1. 계약의 체결

3.1.1. 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서의 작성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제조·구매)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의2 및 제53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Q.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

하지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따라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345쪽 참고 >

3.2. 계약의 이행

3.2.1.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물가 변동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4항).

▹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함)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정하는 지수

▪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후단).

▹ 이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9.).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 변동 및 수량증감에 따른 경우 외에 납품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 ※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물품의 납품과 담보책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물품의 납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3. 가. 1)).

▪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3. 가. 3)).

물품의 검사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참고).

▸ 위의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위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위의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계약물품의 납품 및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담보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물품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담보책임 기간 중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제1호·제2호).

하자보수의 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

▪ 계약상대자가 위의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본문).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3.2.3. 선금과 대가의 지급

물품 제조계약 등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先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조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가. 1)].

▹ 다만, 계약당사자가 30%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가. 2)].

선금의 지급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1)].

▹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지급 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

물품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代價)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 납품한 물품을 검사받은 후 또는 검사조서가 작성된 후에 계약의 대가가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기납(旣納)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는 물품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4.1.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4.1.1.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연배상금의 금액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제3호).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산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함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 다만,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이행이 지체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2))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3))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7))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8))

▪ 계약상대자는 위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본문).

▹ 다만, 위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단서).

> ※ 지연배상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기간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참고).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고, 1, 3, 4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참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참고).

> ※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분쟁해결

4.2.1.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당사자 간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고,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수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음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 중재

이의신청

▪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입찰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4호·제2항).

-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제3절 1. 가. 및 별지 제1호서식).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단서).

※ 재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의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분쟁해결-이의신청 및 재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